

예방접종관리법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38
----------	-------

발의연월일 : 2026. 7. 24.

발 의 자 : 서미화 · 이정문 · 박홍배
김준혁 · 이연희 · 안도걸
서영석 · 남인순 · 김한규
김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예방접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보건서비스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방접종 체계의 구축이 중요함.

최근 성인 예방접종을 포함한 전 생애에 걸친 예방접종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로 예방접종을 주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국민의 예방접종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코로나19의 경험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위한 정책 기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예방접종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분야에 특화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예방접종 정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예방접종의 정의를 질병에 대한 면역 효과를 얻기 위하여 질병 예방에 효과가 확인된 백신 등을 주사 등의 방법으로 인체에 투여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1호).
- 나.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은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다. 예방접종 실시 과정에서 예방접종약품의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소장 및 위탁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치 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라. 모든 예방접종을 한 자는 예방접종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해야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그 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 마. 질병관리청장은 질병 및 접종률 감시, 면역도 조사, 백신 효과평가 등 예방접종 효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26조).
- 바.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

7조).

사.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보건 의료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음(안 제28조).

아.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에 사용하는 예방접종약품을 지정, 변경 또는 취소하고, 필요시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수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음(안 제29조).

자. 국가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안 제39조 및 제40조).

차.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보상을 위해 백신 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징수함(안 제41조).

예방접종관리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 부담을 낮춤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방접종”이란 질병에 대한 면역 효과를 얻기 위하여 질병 예방에 효과가 확인된 백신 등을 주사 등의 방법으로 인체에 투여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예방접종”이란 국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접종 대상, 실시 기준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접종받기를 권장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3. “임시예방접종”이란 감염병의 전파 차단 등을 위하여 임시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4. “예방접종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제29조에 따라 지정한 백신 등을 말한다.

5.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방접종의 실시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 공유, 인력 지원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등의 권리와 의무)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은 국가로부터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② 의료인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예방접종정책 및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예방접종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접종 주간) ① 국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4월 마지막 주를 예방접종 주간으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방접종 주간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홍보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예방접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예방접종 기본계획 등

제8조(예방접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접종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지정, 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3. 예방접종약품의 지정, 구매, 비축,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예방접종 효과평가에 관한 사항
5. 예방접종 관련 인력의 양성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예방접종 관련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예방접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예방접종 실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질병관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예방접종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예방접종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예방접종위원회) ① 예방접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지정, 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3. 국가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및 주의사항 등 실시기준과 방법(이하 “실시기준과 방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예방접종약품의 구매, 비축,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예방접종 효과평가에 관한 사항
6.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 및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예방접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예방접종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예방접종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예방접종의 실시 등

제12조(국가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

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보호자(친권자·후견인·부양의무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예방접종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의 실시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전파 차단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시·도지사가 감염병의 전파 차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할 구역 내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요청 전에 질병관

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전파 차단 등을 위하여 임시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에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 대상자의 범위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에 따라 출입이나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①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은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또는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예방접종 교육)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 종사자에게 예방접종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예방접종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17조(거짓 등에 의한 예방접종 금지) 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보건소장 및 위탁의료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예방접종 사전 확인) 예방접종을 실시하려는 자는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해당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예방접종약품 품질 이상 신고) 보건소장 및 위탁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 실시 과정에서 예방접종약품의 품질 이상을 발견하거나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약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품질 이상 신고에 따른 조치 등) ① 제19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중단 등 국민의 보건위생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예방접종 관련 기록의 작성 등) 예방접종을 실시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 기록을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

여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예방접종 관련 기록을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예방접종 기록의 보고)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예방접종증명서 등) ①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예방접종을 한 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통

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문서의 발급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내역 제공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행정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절차, 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예방접종 완료 확인)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기록 및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예방접종 휴가) ① 사업주는 국가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및 비용의 지원 범위, 신청·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예방접종 효과평가) ① 질병관리청장은 효과적인 예방접종 실시를 위하여 질병 및 접종률 감시, 면역도 조사, 백신 효과평가 등 예방접종 효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평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27조(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예방접종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은 예방접종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2.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 창구
4. 「약사법」 제83조의6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방접종 사업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2.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

3.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예방접종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질병관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질병의 예방·관리 및 예방접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제4장 예방접종약품

제29조(예방접종약품의 지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등의 효과 및 질병 부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백신 등을 예방접종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약품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수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와 방법, 지정 사항의 변경, 지정의 취소,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의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예방접종약품의 구매 및 비축)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약품의 공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방접종약품을 구매 및 비축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접종약품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다.

제31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약품의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량의 예방접종약품을 미리 계산하여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이하 “의약품 제조업자”라 한다)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약사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백신 등을 정하여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생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예방접종약품의 공급)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구매·비축·생산한 예방접종약품의 공급을 위하여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정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배기준 등을 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예방접종약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질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2. 질병이 급속히 확산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치료 병상 현황, 환자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지역

제33조(예방접종약품의 생산 계획의 보고 등) ①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중 예방접종약품을 생산·수입하거나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약품의 생산·수입 계획(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및 실적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약품을 공급하는 자는 예방접종약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약품을 공급하는 자에게 예방접종약품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 또는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4조(백신 등의 구매 특례) ① 질병관리청장은 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예방접종약품으로는 예방접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 중인 백신 등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대상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제35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등)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사람을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한 사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즉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단에 따라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신고 기준·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제3항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고받거나 예방접종 관련 기록 등으로부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의심되어 원인 규명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을 통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구의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① 의료인등은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질병관리청장은 의뢰받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항목, 검사의뢰 방법 및 절차, 검사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 ① 제39조제1항에 규정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등을 조사하고, 제42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의 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국가보상 등

제39조(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장애진단을 받은 이후에 발생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진료비 및 간병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신청하기 전에 그 신청인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진료비 및 간병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할 때 그 진료비와 간병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신예방접종을 한 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신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신청이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정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20일 이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검사·자문 등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국가는 국가예방접종 및 임신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미리 피해보상에 관한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지급기준·절차, 제4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이의신청) ① 제39조에 따른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보상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3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청구인”은 “이의신청인”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통보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부담금)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하여 백신 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로부터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② 부담금은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전년도 예방접종약품 생산액 및 수입액의 1000분의 2

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예방접종약품의 경우 생산액 및 수입액의 100분의 2

③ 질병관리청장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가산금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절차, 이의신청,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한 자 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9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액의 범위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②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자 또는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제39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상금을 잘못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3조(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제39조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7장 보칙

제4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피해보상 등 예방접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국고보조)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관리 및 예방접종 관련 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제공받는 외국인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협조 요청 등) 질병관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인적 자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요청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7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단체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48조(벌칙) ① 제4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자
2. 제23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3. 특별한 이유 없이 제33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명령에 대하여 거부, 거짓으로 보고 또는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자
2. 제3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에 따른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청구를 하거나 보상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청구 또는 결정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청구나 결정의 원인이 되는 예방접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제6호·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을 “예방·치료 의약품에 따른 피해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국가예방접종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 및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

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의6의 제목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를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치료제 구매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백신이나 의약품”을 각각 “의약품”으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염병 예방에”를 “「예방접종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제64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6호 및 제6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예방접종 등”을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한다.

제71조의 제목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을 “(예방·치료 의약품의 투여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을 “제40조제2항”으로, “그 예방접종 또는”을 “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을 “예방·치료 의약품의 이상이나”로, “해당 예방접종 또는”을 “해당”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예방·치료”를 “예방·치료 의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치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방접종을 받은 자, 예방·치료”를 “예방·치료”로 한다.

제76조의4제1항제3호 중 “제28조”를 “「예방접종관리법」 제21조 및 제22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9조”를 “「예방접종관리법」 제36조”로 한다.

제81조제7호·제8호 및 제8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방접종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③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결핵예방접종)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관리법」에 따른다.

④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제2항”을 “「예방접종관리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방접종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⑤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예방접종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실시기록

⑥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1항 본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예방접종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⑦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3제2항제2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예방접종관리법」”으로,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으로 한다.

⑧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6호 중 “제18조의4 및 제29조”를 “제18조의4 및 「예방접종관리법」 제36조”로,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로 한다.

⑨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예방접종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00000호 예방접종관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4조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관리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을 “「예방접종관리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을 “「예방접종관리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⑪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예방접종관리법」 제23조”로,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14조의2 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를 “「예방접종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로, “필수”를 “국가”로 한다.